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MSDS 번호 : AA00633-0000000077

\_\_\_\_\_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\_\_\_\_\_

가. 제품명: 메셀로스®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(MECELLOSE®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)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:

- 용도: 시멘트 모르타르, 석고 모르타르 등 건축용 첨가제 원료

- 사용상의 제한: 용도 외 사용시 당사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공급자 정보

- 회사명 : 롯데정밀화학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길 19

- 담당부서 : 그린소재생산팀 - 전화번호 : 052-270-6380

- 긴급연락번호 : 영업담당자 02-6974-4811

(야간, 공휴일: 052-270-6375)

2. 유해성·위험성

\_\_\_\_\_

가. 유해성 • 위험성 분류: 해당없음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: 해당없음

○ 신호어: 해당없음

○ 유해·위험 문구: 해당없음

○ 예방조치 문구

1) 예방: 해당없음

2) 대응: 해당없음

3) 저장: 해당없음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4) 폐기: 해당없음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 주의!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-공기 혼합물들을 형성할 수 있음. (7. 취급 및 저장방법을 확인하시오: 취급 저장시 180g/m3의 농도로 유지하시오)

유출된 표면은 젖었을 때 미끄러울 수 있음.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

관용명 및 이명(異名)

CAS 번호 함유량(%)

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

9004-65-3

100

구성성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성,위험성 물질,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음

## 4. 응급조치 요령

#### 가. 눈에 들어 갔을 때

-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
#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-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시오.
- 15분 이상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.
-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다. 흡입했을 때

-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.
-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.
- 기침 등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 라. 먹었을 때

-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 하지 말고,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.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- 구토를 일으킬 경우, 기도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게 유지하시오.
-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  -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.
  -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치료하시오.

\_\_\_\_\_

5. 폭발·화재 시 대처방법

\_\_\_\_\_

- 가. 적절한 소화제:
- 분말소화제, 물 분무, 알콜 포말, 이산화탄소
- 큰 화재 시는 물 분무, 일반포말
-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하시오.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:
- 열분해 시 유해한 탄소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음.
-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:
-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: 공기호흡기, 방열장갑, 소방용 화학복, 방열모
- 고압물줄기로 누출된 물질을 흩트리지 마시오.
-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\_\_\_\_\_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:
  - 누출 시 인체보호를 위한 보호구: 방진마스크, 방진복, 보안경
  - 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다면, 직접 화학물질 누출을 중지시키시오.
  - 노출지역을 격리조치하고 관계자 이외 인의 접근을 통제하시오.
  - 누출 즉시 적절한 보호장비로 방제하시오.
  - 누출 장소를 환기시키시오.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:
  - 수로, 하수구, 지하실,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.
-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:
  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절한 용기에 수거할 것.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- 증기가 하수구, 환기장치, 밀폐공간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오

\_\_\_\_\_

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\_\_\_\_\_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섭취, 흡입하지 마시오.
- 분진의 발생과 축적을 최소화 하시오.
- 취급 후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-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- 고온에 주의하시오
- 최소착화에너지(9.8mJ)이 스파크, 정전기 등으로 쉽게 발생하므로 착화원을 제거하시오

#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.
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시오.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.
-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/저장시 폭발하한계(180g/m3) 이하의 농도로 유지하시오.
- 분진폭발한계 산소농도(12%) 이하로 보관하시오.

\_\_\_\_\_

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\_\_\_\_\_

- 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  - 화학물질 노출기준: 10mg/m3 TWA (기타분진)
  - 생물학적 노출기준: 해당없음

#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오.
- 작업공정이 노동부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

# 다. 개인 보호구

- 개인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- 호흡기보호:
  - 방진마스크
- 눈보호:
  -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(샤워식)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.
  - 보안경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- 손보호
  -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.
- 신체보호
  -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진복을 착용하시오.

\_\_\_\_\_\_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(물리적 상태, 색):
  - 성상: 고체
  - 색상: 백색에서 노란색이 도는 백색
- 나. 냄새: 무취
- 다. 냄새 역치: 자료없음
- 라. PH: 4~9 (2% 수용액) (출처: 자체분석)
- 마. 녹는점/어는점: 자료없음
- 바. 초기 끓는 점과 끓는 점 범위: 자료없음
- 사. 인화점: 170℃ (출처: Cefic Safety Instruction)
- 아. 증발속도: 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: 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: 180 g/m3 (출처: Cefic Safety Instruction)
- 카. 증기압: 자료없음
- 타. 용해도: 물에 용해됨 (점도에 의해 제한됨)
- 파: 증기밀도(공기 = 1): 자료없음
- 하. 비중: 0.2 ~ 0.4 g/cc (진비중:1.26 kg/Liter) (출처: 자체분석)
- 거. n 옥탄올/물 분배계수: 자료없음
- 너. 자연발화 온도: 400℃ (출처: Cefic Safety Instruction)
- 더. 분해 온도: 자료없음
- 러. 점도: 고체상태 점도 없음 (물에 용해시 점도 발현)
- 머. 분자량: >2000g/mol (출처: 자체분석)

\_\_\_\_\_

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
  - 상온, 상압에서 안정함
  -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.
  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- 나. 피해야 할 조건
  - 분진폭발 위험성
  - 열, 스파크, 화염 등의 점화원
- 다. 피해야 할 물질
  - 가연성 물질, 환원성 물질
-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- 열분해시 유해한 탄소산화물이 생성될 수 있음.

\_\_\_\_\_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\_\_\_\_\_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  -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(출처: 안전보건공단)
-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  - 급성 독성:
    - 경구: LD50 >10,000mg/kg (포유동물) (출처: TOMES:RTECS)
    - 경피: 자료없음- 흡입: 자료없음
  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: 자료없음 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: 자료없음
  - 호흡기 과민성: 자료없음 ○ 피부 과민성: 자료없음
  - 발암성:
    - 산업안전보건법: 자료없음 - 고용노동부고시: 자료없음
    - IARC: 자료없음 - OHSA: 자료없음 - ACGIH: 자료없음 - NTP: 자료없음 - EU CPL: 자료없음
  - 생식세포 변이원성: 자료없음
  - 생식독성: 자료없음
  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: 자료없음 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: 자료없음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○ 흡인 유해성: 자료없음

\_\_\_\_\_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\_\_\_\_\_

가. 생태독성:

- 어류: LC50 2540000000 mg/ℓ 96 hr (출처: ECOSTAR) - 갑각류: EC50 1640000000 mg/ℓ 48 hr (출처: ECOSTAR) - 조류: EC50 675000000 mg/ℓ 96 hr (출처: ECOSTAR)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: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:

- 농축성: 3.162 (출처: ECOSTAR)

- 생분해성: 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: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

- 오존층 유해성: 해당없음

\_\_\_\_\_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----

가. 폐기방법: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유기성오니에 해당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호 라. 나)오니 (1) 유기성오니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

- (가) 소각하거나 시멘트·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
- (나)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·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. 다만,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·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(다)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,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(나)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.
- (라) 축산폐수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(다)와 같이 처분

- (마)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(다)와 (라)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. 다만,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음.
- 나. 폐기시 주의사항:
  - 하수구, 땅 또는 물웅덩이 등에 버리지 마시오.
  - 분진폭발 위험성 있으므로, 폭발에 주의할 것

\_\_\_\_\_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\_\_\_\_\_

가. 유엔 번호: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: 해당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: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: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: 자료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:

- 화재 시 비상조치: 해당없음 - 유출 시 비상조치: 해당없음

\_\_\_\_\_

### 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: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: 해당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: 지정폐기물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제정일자	1996.07.01
개정일자	2021.07.12
개정번호	20

#### ○ 국내규제
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: 해당없음

## ○ 국외규제

- EU Regulation 1907/2006 (REACH): 해당없음(허가 또는 제한물질이 아님)

- 로테르담협약물질: 해당없음 - 스톡홀름협약물질: 해당없음
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: 해당없음

\_\_\_\_\_

### 16. 그 밖의 참고사항

\_\_\_\_\_

#### 가. 자료의 출처

- 화학약품 대사전(저자: 문성명)

- 위험물핸드북(저자: 이명웅,김행겸)
- 12093의 화학상품(화학공업일보사<일본>)
- 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(RTECS) http://www.cdc.gov/niosh/rtecs/
- National Library of Medicine/Chemical Carcinogenesis Research Information System(NLM/CCRIS)

http://toxnet.nlm.nih.gov/cgi-bin/sis/htmlgen?CCRIS

- http://cfpub.epa.gov/ECOTOX/quick\_query.htm
- 물리적성질: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, Cefic Safety Instruction
- 안전보건공단
- NCIS
- ECHA
- 나. 최초 작성일자: 1996.07.01
- 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: Rev.20 (2021.07.12)

#### 라. 기타:

- 이 MSDS를 롯데정밀화학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, 외국어로 번역하는 행위를 금함.
- 본 MSDS의 내용은 문서에 기재된 개정일자 현재 시점의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다고 믿는 자료를 성실히 기술한 것임. 그러나 표현된 내용이나 함축된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님.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
구매자 또는 사용자는 정부 및 해당지역의 관련규정을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함